

1. 제정 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인신매매등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 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판정의결서, 피해자 확인서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3조)
- 다. 중앙 및 지역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가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질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한 현장 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질문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한 증표인 신분증 서식을 정함(안 제6조)
- 마. 피해자 지원시설에 피해자의 입·퇴소, 입소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필요 서식을 정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친권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바.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관련 필요서식을 정함(안 제10조)

사. 시설환경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서비스 만족도 등 피해자 지원
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2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출신국가, 취업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의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인신매매등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판정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거나 확인서를 교부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4조(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지원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
3.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관련 조사,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5조(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업무)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해자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응급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입소 연계
3.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인신매매등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
4. 인신매매등 피해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보호·지원

제6조(종사자등의 신분증 발급) ①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응급 조치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사자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

받았던 신분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입소 등) 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응급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설에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소 의뢰서를 발급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입소대상인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해당시설에 입소한 경우 입소한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성년자인 보호대상에 대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친권자·법정대리인·친족(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대상이 되는 친권자등이 법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통지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지원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1. 일반지원시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아동·청소년지원시설: 피해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피해자가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7호의 서식을 제출한다.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지원시설의 장이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지원시설의 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시설의 퇴소 등) ①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한 구조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퇴소 또는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②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피해자를 퇴소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0조(지원시설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와 같다.

② 영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증명서는 별지 제10호와 같다.

③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와 같다.

제11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종사자의 전문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시설의 지역지역협력체계 구축 정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인신매매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판정의결서					
신청사유 및경과					
신청자	성명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판정의견					
판정기관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판정일시		년 월 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판정위원장 (서명 또는 인) 판정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판정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피해자 확인서	
피해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명		
	주소 또는 거소		
	보호자(필요시 기재)	보호자와의 관계(필요시 기재)	
피해유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 성매매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확인번호		최 초 확인일 자	
제 출 처			
※ 본 피해자확인서는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형사상 증빙 등)로 사용 불가함.			
위 사람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피해자 확인서 신청 및 발급 대장								
연번	신청일	신청자명 (별칭)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여부	미발급 사유	처리자	비고
1								
2								
3								
4								
5								
5								
6								
7								
8								
9								
10								
⋮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앞쪽)

신 분 증 (지역 연도-연번)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성 명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70mm×100mm(켄트지 180g/㎡)

(뒤쪽)

신 분 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00지역인신매매 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을 소지한 상담원 등은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 호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 한 구조활동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 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증인신문 등에 동행·동석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종사자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인신매매등피해자 입소 의뢰서				
입소 의뢰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계 기관	기관명			기관장 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입소 의뢰 사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귀 지원시설에 위 인신매매등피해자의 입소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지역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 귀하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심의 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입소 연월일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퇴소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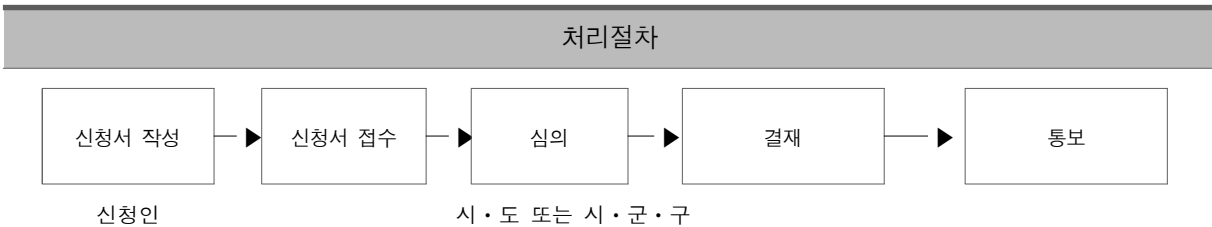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명칭		시설종류				
	소재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운영개시 예정일		입소정원(명)				
시설 설비	총	㎡(거실	㎡, 사무실	㎡, 목욕실	㎡, 조리실	㎡, 기타	㎡)
직원	총	명(시설장	명, 사무국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일반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지원시설 []아동·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지원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원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원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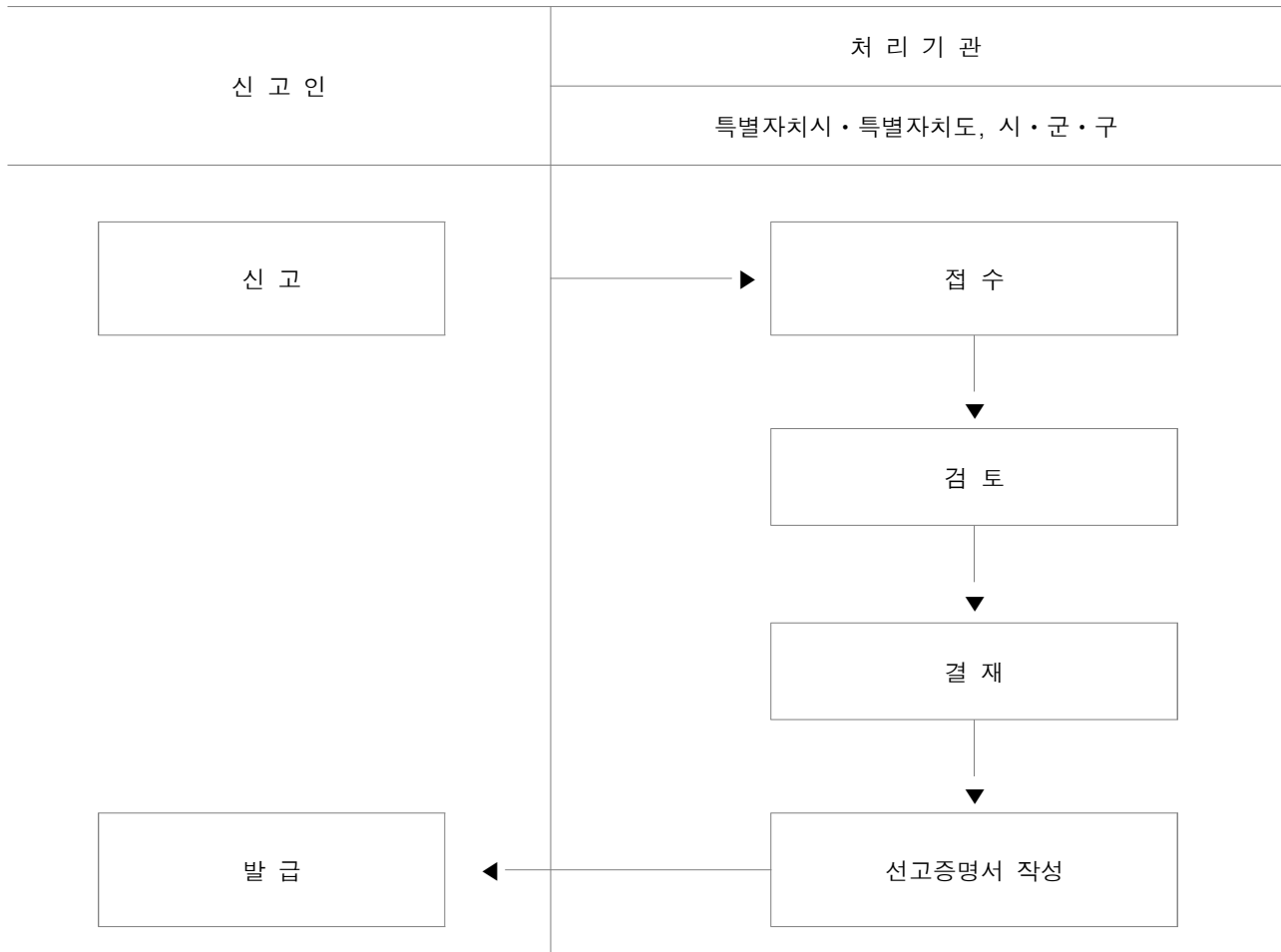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

1. 시설명:

2. 소재지:

3. 입소정원: 명

4. 운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5.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6. 인가조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변경사항		
날짜	내용	기록자 (서명 또는 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

([]시설장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시설 개요	피해자 지원시설명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후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인신매매등피해자 지원시설 지정서 2.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지원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3. 임대차계약서(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